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박기 환 교수 /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 최근 국민들의 식생활욕구는 급변하여 소위 몸에 좋다는 식품을 찾고 있으며, 웰빙(Wellbeing)시대의 조류가 우리식문화에 가속화되고 있으며
- 우리보다 15년 이상 앞서 건강기능식품관련 제도를 발전시켜온 미국과 일본의 경우 우선적으로 일반식품 중에 해당품목을 선별하여 건강기능식품 대상으로 인정하여, 시장의 발전과 과학적인 근거가 축적됨에 따라 식품시장에서 기능성 식품이 급성장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 우리나라에서는 역으로 영양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상의 건강기능식품)에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실정으로 향후 코덱스에서 식품에 대한 건강강조표시 기준이 설정될 경우 국제교역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을 예측했다.

□ 미국의 건강강조 표시(Health claim)의 경우 어떤 종류의 암에 걸릴 위험을 줄여 줄 것이라는 표시식품으로 섬유소 첨가 곡물제품(과일,채소),칼슘제품에는 노년기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을 줄여주는 표시로 수용성

섬유소를 함유한 과일, 채소 외 곡물제품에서는 심장병의 위험을 줄여 줄 것이라는 표시가 가능하며 당알코올이 충치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일본의 특정보건용도식품(개별 허가형의 기능성 표시)은 일반가공식품류 424품목에 대해 기능성 표시 허가를 하고 있는데 중요 내용으로는
 - 장의 상태를 조절해주는 식품으로 올리고당 함유식품, 유산균 함유식품, 식이섬유 함유식품, 기타 성분 함유식품
 -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을 위한식품 : 대두 단박, 키토산, 식품스테롤 등
 - 혈압이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 : 두충잎 배합체, 가다랭이포
 -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주는 식품 : CPP(카제인 포스포 펩타이드)
 - 뼈의 건강이 염려되는 사람을 위한식품 : 대두 isoflavone, milk Baic povetein
 - 충치 원인이 되지 않는 식품 : 충치증식을 억제하는 Tea pelyphenal
 - 혈당치가 염려되기 시작한 사람을 위한 식

품 : 대두 발효물 엑기스

- 혈중 중성지방, 체지방이 염려되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 : 식물성 스테롤, 디아크릴글리세롤 등이라고 설명했다.

□ 국내건강기능식품시장 상황 및 문제점으로는

- 식생활 문화의 변화에 따라 식품선택의 정보 표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식품의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증대 및 다양화.
- 과학기술의 발달로 식품안전과 식품기능에 대한 과학적 입증 증가.
- 국민건강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비과학적 정보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 및 피해사례 증가.
- 식품안전과 식품의 기능성 정보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정부의 식품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 증가로 식품안전신인도가 20~30% 정도이며
- 한정된 제형의 건강기능식품은 약국 등에서 주로 판매되어 의약품오인에 의한 식품산업의 한계
- 건강기능식품관리법에 의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금지 규정에 의한 식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기능성 원료를 일반식품에 사용할 경우, 그 기능성을 표시하게 하는 것은 식품산업과 국민건강관리 및 의료비 절감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하며 그 방안으로는

1. 식품위생법 제11조 허위표시금지규정에 근거한 기능성 표시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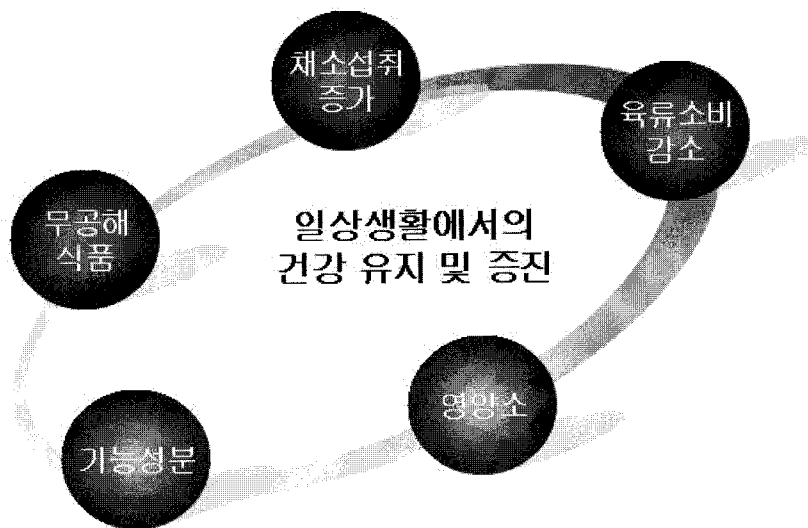
- 식약청장이 인정한 식품원료의 기능성을 일반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은 허위표시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 ▶ 식품위생법 제1조 목적에서와 같이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부합토록 하고
- ▶ 식품의 기능성 표시 확대에 대한 국제적 조화
-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유용성 표시 확대
- ▶ 국내 농업생산육성을 확대 및 소득 증대에 기여 등을 통해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제도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이를 위하여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한 별표3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규정」에 식약청장이 인정한 기능성원료를 일반식품에 사용 시 표시허용 제도화를 위해
- ▶ 2004년 국무총리실의 식품안전종합대책에 의하여 농림부에서는 축산물가공 처리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규정의 적용대상 축산물의 범위를 2004년 8월 4일자로 삭제하여 모든 축산물에 유용성 표시를 허용한 것과 같이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규정의 적용대상 식품, “특수영양식품”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 했다.

2. 건강기능식품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다른 식품에 대한 규제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키 위해 건강기능식품 관리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에 한정하고, 타 법령에 의한 식품에 대한 규제규정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인의 식습관과 건강관리

- **식생활 변화**
 - 과다섭취에 의한 영양불균형
 - 6대 질병의 원인
 - 생활습관병 발병률 증가
- **식품의 역할**
 - 건강한 삶 영위
 - 질병 예방 가능
- **건강관리**
 - 식생활 관리
 - 자연지향적 무공해식품
 - 일부 건강기능식품

식생활과 Well-Being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 개선 배경

- 2004년 1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
 - 일반식품의 유효성 표시 금지
- 기능성분, 몸에 좋은 식품에 대한 인식 광범위
 - 다류(녹차), 과채가공품, 벌꿀 등
- 식품의 건강기능표시 확대가 국제적 추세
 - 제도에 의한 강제적 규제는 무리
-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제도 개선 필요

목 차

- 1 국내 유용성 표시 운영 실태
- 2 국외의 유용성 표시 운영 사례
- 3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 확대 필요성
- 4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 개선 제안

국내 유용성 표시 운영 실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18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 제26조 (유사표시 등의 금지)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2조 (영업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6.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 등의 금지나 유사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9조 내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건강기능식품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 행정처분기준(제31조관련)

II.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6. 법 제26조 위반 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그 용기·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한 때 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때	법 제32조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15일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

식품위생법

• 제11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①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2002.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6조 (허위 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8.31, 1996.12.20, 1998.10.19, 2001.7.31, 2003.8.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식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5.8.31, 1996.12.20>
 - ③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8.3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3

• 허위표시·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와그 적용대상식품(제6조제2항관련) <개정 2000.8.8, 2004.1.31>

1. 적용대상식품 특수영양식품

- 2. 표시 및 광고(표시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하고 광고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와 특정회원용 제품 설명서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가. 유용성

- (1) 삭제 <2004.1.31>
- (2)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여 대한 영양보조 등)
- (3)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식품영양학적 기능 및 작용의 표현(예시 :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능 및 작용)<개정 2000.8.8>

나. 용도

-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용도에 따라 용도의 표현 (예시 : 유아식, 환자식 등)
- (2) 특정효능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용장 내용의 표현 (예시 : 발효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청년기, 노년기여 좋다 등)

다. 섭취방법 : 섭취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

- 라. 기타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0.8.8 개정>

표시

- 식품 표시
 - 식품의 특징에 대한 정보 제공
 - 건강 측면에서 식품표시 내용 중 식품의 영양소 함량과 건강증진 효과에 관한 정보가 중요
- 영양표시(Nutrition Labeling)
-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
-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
 - 국민 보건 증진 목표 달성에 기여

영양표시

- 식품의 영양적 특성이나 건강에 유익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건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영양소 함량 표시는 영양강조표시(영양소의 존재, 부재 또는 함유량 기술) 수단
- 제조업자들이 제품의 영양적 특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건강강조표시

- 특정 식품이나 영양소의 영양상, 건강상의 이로운데 대한 정보 제공
- 좋은 영양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
- 제품간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식품회사의 중요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
- 원재료 함량 표시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

표시의 정의 및 구분

- 영양강조표시
 - 영양소함량강조표시
 - 함량의 절대량 기술; 저지방
 - 영양소비교강조표시
 - 상대적 함량 표시; 지방을 줄인, ~보다 지방이 적은
- 건강강조표시
 - 영양소기능강조표시:
 - 엽산은 적혈구 형성의 중요한 재료이다
 - 기타기능강조표시
 - 칼슘은 뼈의 밀도를 높여줄 수 있다
 - 질병위험감소강조표시
 - 과일과 채소는 암에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다

농 · 임 · 축 · 수산물의 정의

-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법>
-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가공육성법/농산물품질관리법>
- "수산물"이라 함은 이식용수산물을 제외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 제3조 (표시대상) 표시대상 식품등 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바. 가목 내지 마목외의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자연상태의 수입된 농 · 임 · 축 · 수산물로서 용기 · 포장에 넣어진 것. 다만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식품의 정의

-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제2조 제4항 <약사법>

이 법에서 "의약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1965.4.3, 1971.1.13, 2000.1.12>

 1.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일반식품의 범위 및 유용성 표시 금지

- 식품의 범위
 - 약사법 제2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 농·임·축·수산물을 모두 포함
 -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였으나 6 가지 제형을 제외한 형태로 제조·가공한 일반식품
- 유용성 표시 금지 대상
 - 기존의 일부 유용성 식품
 - 6가지 제형 외 유용성 식품
 - 기능이 알려진 농·수산물

국외의 유용성 표시 운영 사례

미국:

- 표시 대상
 - 식품
 - 식이보충용식품

- 건강 또는 기능 강조표시
 - 식품과 식이보충용식품 구분 없음
 - * 식이보충용식품(dietary supplements): 제형 제한
 - 과학적 근거 수준과 국가의 허가 여부에 따라 구분

-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영양성분표시, 영양강조표시 규정에 반영

NLEA의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s)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영양표시및교육법)

• 12가지 영양소와 질병관계에 대한 건강강조표시

- | | |
|---------------------------------|---------------------------------|
| ① 칼슘과 골다공증 | ⑦ 과채류와 암 |
| ② 나트륨과 고혈압 | ⑧ 염산과 신경관계 결함 |
| ③ 식이지방과 암 | ⑨ 당알콜과 충치 |
| ④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과
관상동맥 심질환 | ⑩ 수용성 섬유소와 관상동맥
심질환 |
| ⑤ 섬유소함유 곡류, 과채류와
암 | ⑪ 대두단백과 관상동맥 심질환 |
| ⑥ 섬유소 함유 과채류 및 곡류
와 관상동맥 심질환 | ⑫ 식물성 스테롤/스타놀에스테
르와 관상동맥 심질환 |

DSHEA의 구조기능 강조표시

Dietary Supplement and Health Education Act(식이보충용식품건강및교육법)

• 일반식품

- 구조기능 강조표시
 - 영양소나 식이성분이 인체의 정상적인 구조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
 - “칼슘은 튼튼한 뼈를 구성한다”
 - “섬유소는 규칙적인 장운동을 유지한다”
 - 영양소나 식이 성분 섭취로 인한 일반적인 well-being의 설명 가능
- 질병 강조표시
 - 영양소 결핍질환(비타민 C와 괴혈병) 관련 기능 강조

• 식이보충용식품의 구조기능 강조 표시

- 특별한 필요조건 충족
- 제조업자 스스로 표시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일반식품에 대한 기타 건강강조표시

• 권위있는 문구에 근거한 건강강조표시

- FDAM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odernization Act) 식품의약품행정현대화법
 - 과학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권위있는 문구를 근거로 건강강조표시 작성
 - FDA가 120일 이내 반대 의사 없음
 - 판매업자와 제조업자 건강강조표시 사용
 - 표시에 대한 FDA의 사전 승인에 대한 비용과 시간 절감
 - 일반식품에 대한 건강강조표시 절차 및 기준 관련 조항 개정

• 제한적 건강강조표시

- 1999년 소송에서 FDA 패소
 - 식품과 질병과의 관계가 건강강조표시 허용수준에 미흡
 -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는 범위에서 식품과 질병관계 표시 가능
- FDA 표시 사용 신청
 - 적용대상식품과 제한적 건강강조표시 사항 명시

일본: 식품의 건강기능표시 사례

- 생리활성기능 최초 인정
 - 식품자체의 안전성과 기능성 평가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 국민영양 개선
- 건강기능식품 제고 검토 방향
 - 질병위험감소표시 허용
- 건강보조식품
 - 일본 건강·영양식품협회(Japan Health Food and Nutrition Food Association, JHNFA)
 - 자율규격기준 설정
 - 기준 적합 시 JHFA 마크 부여
 - 53개의 건강보조식품 규격 기준 설정 운영
- 보건기능식품(Food with health claims)
 - 특정보건용식품(개별허가형)
 - 영양기능식품(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

- 정의:
 - 인체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생리학적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관여하는 특정 보건기능을 갖는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 영양기능+감각기능+생체조절기능
 - 특정성분의 첨가·증강/제거
- 범위: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 일반 형태
 - 보건용도 및 일일섭취량이 의학적, 영양학적으로 타당한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설정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 2004년 6월 기준, 424개 품목

특정보건용식품 성분

- | | |
|------------|--|
| ① 정장작용 | ① 장의 상태를 조절해주는 식품 |
| ② 혈압조절 | ② 혈압이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 |
| ③ 혈당조절 | ③ 혈당치가 염려되기 시작한 사람을 위한 식품 |
| ④ 콜레스테롤조절 | ④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 |
| | ⑤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장의 상태가 염려되는 사람을 위한 식품 |
| | ⑥ 혈중 중성지방, 체지방이 염려되는 사람을 위한 식품 |
| | ⑦ 혈중 중성지방, 체지방이 염려되는 사람 또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 |
| ⑤ 고흡수성미네랄 | ⑧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주는 식품 |
| | ⑨ 미네랄 흡수 및 장의 상태를 조절해 주는 식품 |
| | ⑩ 뼈의 건강이 염려되는 사람을 위한 식품 |
| ⑥ 치아의 건강유지 | ⑪ 치아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는 식품 |
| | ⑫ 충치의 원인이 되지 않는 식품 |

CODEX: 식품 중 건강 및 영양 강조표시

- “건강 및 영양 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서”
 - 8단계
 - 질병위험감소강조표시
 - 질병개선과 식이섭취 간에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관리
- 영양소기능표시
 - 신체의 성장, 발달 및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적 역할을 나타내는 것
 - 칼슘은 강한 뼈와 치아의 발달을 돕는다
 - 엽산을 함유: 엽산은 태아의 정상발육에 기여한다
- 건강강조표시
 - 식품 또는 그 식품성분이 건강과의 관련을 나타내는 모든 표현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 확대 필요성

- **노령인구의 건강수명 지속**
 -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
 -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부담 증가
 - 식품섭취에 의한 건강 유지 및 생활 습관병 예방
-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 식품산업: 약 36조4천억원(2002년)
 - 건강기능식품: 약 2조5천억원(6.9%)
 - 일반식품산업육성: 신소재/신제품 개발 절실
- **일반식품의 표시 기준에 대한 국제적 조화**
 - 수출입에 대한 분쟁
 - 수출입 제한으로 국제 경쟁력 약화

- **관련 법과의 형평성**
 -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의 기능성표시 확대
 - 2004년 8월 4일 개정으로 적용대상 삭제
 - 1. 적용대상 축산물: 식육추출가공품
 - 2004년도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종합대책에 따름
- **농산물·농산물가공식품의 기능성 홍보 확대**
 - 건강과 식품 관련 TV프로그램에서 효능 소개
 - 기능 성분이 알려진 농산물·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한 표시나 광고 제한에 따른 국내 농업생산기반 위축
- **기능성 유사 표시 및 광고의 실질적 단속 불가능**
 - 소비자 인지도
 - 언론 매체의 기사
 - 기능성 식품 소비 유도

축산물가공처리법

- 제6조 (축산물의 표시기준)
- 제32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 제52조 (허위 표시등의 범위와 적용)

-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8.5, 2004.8.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4.8.4>
 -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8.4>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52조제2항관련) <개정 2000.12.11, 2004.8.4>

1. 삭제 <2004.8.4>

1. 적용대상 축산물 : 식육추출가공품

2. 표시(가공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고(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유용성

- (1) 신체조작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할 수 없다(예시: 거각우지, 거각우지,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부족 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당뇨용, 변비용 질병예방과 치료라는 표현 등은 할 수 없다.))
- (2)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
- (3) 제품에 함유된 주요 영양성분의 영양학적 기능·작용에 대한 표현(예시: 비타민·칼슘·철·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

나. 용도

-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용도에 따른 표시·표현(예시: 유아식·환자식 등)
- (2)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내용의 표현(예시: 발육기·성장기·임신수유기·갱년기·노화에 좋다 등)

다. 용법·용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 제품의 영양학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 개선 제안

- 단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3 개정
 - 영양소 기능 표시 또는 기타기능 표시도입
 - 미국, 일본, Codex 등의 사례
- 장기 : 별도의 유용성 표시 특별법 제정
 - 유용성 표시 대상 식품 별도 규정
 -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일본의 특정보건용도식품 사례

표시 범위 규정 개정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3 개정 방안
 1. 적용대상식품 제한조항 삭제
 - 축산물가공처리법의 별표 14와 동일
 - 1. 적용대상식품 : 특수영양식품
 - 영양소기능 관련 건강강조표시 허가 범위 수록
 2. 적용대상식품 추가
 - 유용성 표시 범위 규정
 - 성분, 적용 대상
 - 유용성 표시 기준
 - 일본 특정보건용도식품
 - 미국 NLEA법의 health claims

표시 예

- **칼슘과 골다공증**
 -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노년기에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을 줄여줄 것이다. 단 지나친 함량을 섭취하는 것은 뼈의 건강을 위해 좋을 것이 없다.
- **과일과 채소와 암**
 - 과일과 야채가 풍부한 저지방 식이는 암에 걸릴 위험을 줄여줄 것이고 브로콜리는 비타민 A, C가 풍부하고 식이섬유의 좋은 원료이다.
- **치아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는 식품**
 - 총치균 영양원이 되지 않는 기능 성분: 자일리톨
- **장의 상태를 조절해 주는 식품**
 - 올리고당 함유식품, 유산균 함유식품, 식이섬유 함유식품 등

결론

- **식품위생법의 목적인 국민 보건 증진 부합**
 -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식품의 기능성 표시 확대에 대한 국제적 조화**
 -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유용성 표시 확대 절실**
 - **국내 농업생산기반 확대 및 소득 증대에 기여**
- ➡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 제도 확대 시급**